

# 中國行政訴訟制度의 歷史的 發展과 中國行政訴訟法

孫漢琦\*

## I. 緒言

1989년 4월 4일 중국의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는 {中華人民共和國行政訴訟法}을 통과시켜 1990년 10월 1일을 기해 그 시행을 보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현대 법제사에서 있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대 사건으로 중국의 法制 現代化의 한 分水嶺을 이룬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법의 제정 직전까지는 독립된 행정소송법이 없이 民事訴訟法(試行法) 제3조 2항에 [법률이 人民法院이 審理하도록 규정한 행정사건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심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行政訴訟法이 제정되어 행정사건은 行政訴訟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하도록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된 民事訴訟法(1991년)에서는 上記 試行法의 제3조 제2항은 削除되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법의 제정으로 인민법원이 정확히 적시에 행정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公民, 法人 또는 기타 조직의 合法的인 權益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국에서도 이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國家行政機關에 대한 法制監督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어 행정기관의 직

\* 嶺南大學校 法科大學 助教授, 法學博士。

무집행의 適法性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소송법이 제정되기 까지 중국의 行政訴訟制度의 發展過程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行政訴訟法 全文을 鏡譯 紹介하기로 한다.

## II 社會主義化 以前의 中國의 行政訴訟制度

### 1. 辛亥革命 以前의 制度

행정소송제도의 源流 중 가장 오랜 것은 御史制度라고 한다.<sup>1)</sup>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대에는 司法은 行政에 종속되었으며 사법과 행정이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였고 官民은 불평등한 관계를 이루어 民이 官을 고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의 行政訴訟制度는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專制王朝時代에도 정권을 鞏固히 하는 방편으로 행정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으며 行政處罰이나 行政管理 方면에 관한 수많은 입법이 있었으며 비교적 완비된 御史制度를 가지고 있었다. 이 御史制度는 일찌기는 周代에도 나타난 바가 있었으나 唐時代에 와서 완비되었다고 한다.<sup>2)</sup>

御史는 監察, 檢察, 裁判등의 종합적인 권력을 가진 皇權擁護를 위한 기구이었으며, 법률의 遵守와 執行을 감독하고 각급관리의 위법, 직권남용을 조사처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行政을 監督管理하고 官吏의 위법행위를 督察하는 면에서 과학하면 御史制度에는 現代의 行政소송제

1) 皮純協, 胡錦光 主編, 《行政訴訟法教程》(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3), 28面; 楊炳芝, 李春霖 主編 《中國訴訟制度法律全書》(北京:法律出版社, 1993), 387面等。

2) 上揭, 《中國訴訟制度法律全書》, 同面。

도와 유사한 점도 있다.

## 2. 辛亥革命 以後의 發展

(1) 辛亥革命이 성공하여 清朝가 멸망한 후 孫文이 領導하는 南京臨時政府는 사법제도의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1912년 3월 11일 처음으로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담은 {臨時約法}을 제정공포하였다. 즉 約法 제8조는 [人民은 行政官署에 陳述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인민은 자기 권리에 損害를 가하는 官吏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平政院에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同 約法 제49조는 [법원은 법률에 의거하여 民事訴訟과 刑事訴訟을 심판한다. 다만 行政訴訟 기타의 特別訴訟은 별도의 법률로 이를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중국에서 처음으로 행정소송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短命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約法上의 행정소송원칙이 법률화되지 못하고 정권은 袁世凱에게 築奪당하게 되었으며 袁世凱의 死後에는 북경에 北洋軍閥政權들이 들어서게 되었다.<sup>3)</sup>

(2) 北洋軍閥政府는 1913년에 소위 {天壇憲法草案}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 제79조는 [법원은 法律의 規定에 따라 訴訟 및 非訟事件을 수리한다. 다만 특별소송으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여行政訴訟을 承認할 의사를 은연중 비추고 있으며 1914년에 제정된 {約法} 제8조는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官署에 청원할 권리와 平政院에 陳訴할 권리를 갖는다]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은 원칙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軍閥政府는 1914년 3월 31일에 {平政院制令}을, 동년 5월 18일에는 {行政訴訟條例}를, 그리고 동년 7월 15일에는 {行政訴訟法}을 잇달아 공포하여 행정소송제도의 골격을 마련하

3) 李敏鎬, 辛勝夏 共著 《世界文化史》, (서울: 大明出版社, 1986), 530면.

였다.<sup>4)</sup>

이들 법령을 중심으로 당시의 행정소송제도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우선 이 시기에는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권은 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平政院에 속하였다. 平政院은 상기 {平政院制令}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이 제령은 모두 29조로 되어 있었다. 이 制令에 따르면 平政院은 大總統 직 할의 기관으로 여기에 肅政廳과 3개의 裁判廷을 설치하였다. 각 재판정은 5인의 評事로 조성되며 이 중 하나가 廷長이 되며 1 내지 2인은 司法職 出身으로 하였다. 肃政廳은 16명의 肃政史로 구성되며 그 중 하나가 都肅政 史가 된다.<sup>5)</sup>

이와 같은 平政院의 구조는 행정소송제도에 중국 古代의 御史制度를 接木한 것이라 한다.<sup>6)</sup>

평정원에서는 行政事件과 紛彈事件(糾彈案件)을 재판한다. 규탄사건은 肃政史가 官員의 위법한 賂物授受行爲, 權力濫用行爲등에 대하여 기소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現今의 公務員懲戒活動과 유사한 것이다. 肃政史는 {行政訴訟條例}에 따라 인민이 제소하지 않은 사건을 평정원에 제소하기도 하며, 행정관원을 규탄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나) 그러나 각종의 障碍로 인하여 이 시기에 일반 公民이 行政訴訟을 제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였다고 한다.<sup>7)</sup> 왜냐하면 行政소송조례에 의하면 오로지 [中央 혹은 地方의 最高行政機關]에 대하여만 行行政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최저급의 行政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行行政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최고급에 이르기 까지 順次로 上級 行政機關에 訴願을 제기하여 이 최고급 行政기관의 訴願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만 行政

4) {行政訴訟條例}와 {行政訴訟法}은 내용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시간적 간격도 2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中華民國의 첫번째 行行政소송법으로 일컬기도 한다(羅豪才, 應松年 主編, 《行政訴訟法學》(北京: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4), 66面).

5) 評事와 肃政史는 모두 30세 이상의 者로 行政직 3년 또는 사법직 2년 이상을 거친자로任命하였다(上揭書, 67면).

6) 前揭, 《中國訴訟制度法律全書》, 387면.

7) 羅豪才, 應松年 主編, 前揭書, 69面.

소송이 가능하였며 이는 民國 初期의 교통사정이나 백성의 생활수준에 비추어 거의 불가능한 일로 사실상 訴訟을 禁止하는 것과 같았다 한다.<sup>8)</sup>

그리고 조례에는 각급 행정기관의 訴願에 대한 결정기간이 법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한다. 또한 조례 2조에 의하면 平政院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수리하지 않도록 되어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한다.

(3) 國民黨政府에 와서는 立法, 行政, 司法, 考試, 監察의 5權 分立제가 시행되었으며, 이 시기의 행정소송에 관한 입법으로는 1932년 11월 공포된 《行政法院組織法》과 《行政訴訟法》<sup>9)</sup>이 있다. 이와 같은 법률에 의하면 이 시기에는 행정사건을 다루기 위하여 行政法院<sup>10)</sup>이 설립되었으며, 이는 과거의 平政院과는 다른 기구로 司法院에 속하고 있었으며 蕭政廳은 설치되지 않고 裁判廷만 설치되었으며, 이 재판장에는 5인의 評事두고 이 중 적어도 2인은 법관을 역임한 자로 임명하였다.

{行政訴訟法} 제1조에 의하면 [公民이 중앙 혹은 지방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訴願法에 따라 再訴願을 거쳐 그 결정에 不服하거나 再訴願을 제기한 후 3월이 넘도록 결정을 하지 않거나 재소원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후 2월이 넘도록 결정하지 않는 때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요즈음의 행정소송제도와 비교할 때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국민당 정부는 행정소송법 이외에도 {訴願法}을 제정하여 공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訴願<sup>11)</sup>과 再訴願의 두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同法 제2조는 [行政訴訟을 제기하는 경우는 損害賠償의 請求를 附帶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平政院時代와는 달리 손해배

8) 上揭書, 同面.

9) 이 법은 章節의 구분이 없이 모두 27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수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도 中華民國(臺灣)의 행정소송법으로 시행되고 있다(32년의 법과 현재 대만의 행정소송법의 차이에 관하여는 前掲, 羅豪才, 應松年, 主編 《行政訴訟法學》, 74면 參照).

10) 이 行政法院은 형식상으로는 司法院에隸屬하는 것이었으나 최고법원과 같은 레벨의 법원으로 中央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20餘人이 일년에 수십건의 사건만을 재판하였으며 그것도 대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었다고 한다(前掲, 《行政訴訟法論》, 70面).

11) 行政復議라고도 한다.

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平政院과 마찬가지로 행정법원의 재판도 單審制이었으나 일정한 경우는 再審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심리는 비공개로 하였다.

### III. 社會主義化 以後의 行政訴訟制度의 발전

#### 1. 民事訴訟法(試行法) 制定前의 行政訴訟制度

1949년 9월 29일 중국 공산당은 臨時憲法 구실을 하는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을 채택한 바, 이 강령 제19조는 [인민과 인민단체는 인민감찰기관 또는 인민사법기관에 모든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고소할 수 있다]라고 하여 行政訴訟의 길을 열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같은해 {最高人民法院試行組織條例}는 最高人民法院에 行政裁判庭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이 규정은 시행되지 못하였고 이후 제정된 法院組織法에서는 삭제되고 말았다. 따라서 行政소송을 위한 통일적인 節次法이나 法廷은 마련되지 못하였고 여러가지 단행법에서 行行政소송에 관한 사항을 個別의으로 정하고 있었다.<sup>12)</sup>

이후 1954년 9월 20일에는 중국 최초의 {中華人民共和國憲法}이 제정되었고 이 憲法 제97조는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은 위법 부당한 모든 국가기관의 담당자(工作人員)에 대하여 각급 국가기관에 書面 또는 口頭의 告訴(控告)를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기관의 담당자가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行行政訴訟의 存在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중국의 건설과정에서 대규모의 경제

12) 예컨대 1950년의 {土地改革法}에서는 農民이 지방정부가 比準評定한 成分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縣人民法院에 신청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勞動部關於勞動爭議解決程序的規定)에서 노동행정기구의 仲裁에 불복하는 경우는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볼 수 있다.

설과 정치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切實하여 모두 당중앙에 복종하는 一元化된 集中領導制가 채택되게 되고 이것이 습관화 되자 저절로 法制觀念은 열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급의 행정담당자들의 행정활동을 법률적으로 감독할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여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多發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1966부터 10년간 지속된 文化大革命期에 尤甚하였다.<sup>13)</sup>

## 2. 民事訴訟法(施行法)의 제정과 行政訴訟制度

(1) 四人幫의 몰락후 行政法制가 회복되고 새로운 법제건설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행정소송관련의 法規들이 새로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sup>14)</sup>

또한 1982년의 新憲法 제41조는 [中華人民共和國 공민은 모든 國家機關 및 國家의 공무원에 대하여 批評과 建議를 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가기관 또는 국가공무원의 위법행위, 직무태만행위를 관계기관에 申訴,告訴 또는 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사실을 捏造 또는 歪曲하여 謠告陷害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행정소송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 제도의 수립에 일대 전환점이 된 것은 1982년 3월 8일의 {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試行)}의 제정이었다.

(2) {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試行)} 제3조 제2항은 [법률이 인민법원이 수리하도록 규정하는 행정사건에는 本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중국 행정소송제도의 轉換點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민은 行政機關을 告訴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판할 권한이 있다.

(나) 인민의 行政기관에 대한 提訴와 法院의 受理는 반드시 單行法의 규

13) 前揭, 《中國訴訟制度法律全書》, 388面.

14) 예컨대 1979년의 《選舉法》 제25조, 1980년의 《中外合資經營企業所得稅法》 제15조등은 行政訴訟에 관 liên된 것이었다.

정에 의거해야 한다. 즉 단행법에서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提訴와 受理가 가능하다.<sup>15)</sup>

(다) 인민법원이 行政事件을 수리한 후에는 民事訴訟節次에 따라 심리를 진행한다.

이전에는 單行法에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도 節次法이 마련되지 않아 實效性이 없었으나, 이 규정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모든 행정사건이 심리될 수 있게 되어 비로소 본격적인 행정소송이 행해지기 시작하였다. 1982년 이후 중국인민법원에 수리되는 행정사건의 수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sup>16)</sup>

한편 이 條項의 시행과 더불어 각 인민법원에 행정사건을 전담하는 行政裁判庭이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수는 급격히 불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조항은 行政訴訟制度의樹立 및活性化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지만 결국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다룬다는 점에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요컨대 人民이 行政機關을 상대로 제소하는(民告官) 행정소송관계를 수평적인 私人間의 民事의 紛爭의 해결을 위한 절차인民事訴訟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미 촉발된 행정소송에 대한 욕구와 이를 위한 實務事情은 별도의 행정소송법 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곧이어 행정소송법의 제정작업이 개시되었다.

### 3. (中華人民共和國行政訴訟法)의 制定

上述한 바와 같이 1982년 부터 行政事件을 심리하기 시작한 이래 많은 行政裁判庭이 설치되었고 여기서 다수의 행정사건을 재판한 결과 행정재판

15) 이즈음에 公民 또는 法人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單行法은 세무, 위생, 특허, 저작권등 다방면에 걸쳐 이미 130여개에達하고 있었다고 한다(前揭《中國訴訟制度法律全書》, 388面).

16) 예컨대 1986년에는 632건 이던 것이 1987년에는 5000여건으로 8배로 증가하였고, 1992년의 수리된 제1심의 행정사건은 27,125건에 이르고 있다(《中國法律年鑑》(北京:中國法律年鑑社, 1993), 937面).

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게 되었고 行政裁判官의 재판능력도 향상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행정소송법제에 대한 관념도 강화되어 이제는 행정소송법을 제정할 객관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은 물론이고 행정소송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行政訴訟法의 제정을 서두르게 되었다.

1986년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法制工作委員會는 관련 전문가를 모아 行政立法研究小組를 구성하여 행정소송법의 기초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위원회는 憲法을 기초로 하여 수년간의 行政裁判의 經驗을 總結하고 외국의 행정소송제도를 參酌하여 草案을 작성하여 각급인민법원, 검찰원, 중앙유관기관 및 각지의 法律專門家의 의견을 구하여 수정한 후 이를 제7기 全人代 常務委員會 제4차會議의 審議에 붙였다. 이 회의에서는 草案全文을 공포하여 전국 人民의 意見을 구하는 한편 4차례의 座談會를 개최하여 의견을 구하였으며 아울러 일부의 省,市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국무원의 유관기관 및 법률전문가 80餘人으로 구성되는 專門會議를 개최하여 草案을 逐條審議하여 수정작업을 하였다.<sup>17)</sup>

이후 제7기 全人代 常委 제6차회의에서 이 案을 1989년 3월에 개최되는 제7기 全人代 제2차회의에 提請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中華人民共和國行政訴訟法)은 1989년 4월 4일 하오에 대회의 表決을 거쳐 통과되어 같은 날 中華인민공화국 主席令 제16호로 공포되어 1990년 10월 1일부터 施行되게 되었다.

#### 4. 行政訴訟法制定의 意義

행정소송법의 제정은 중국의 법제건설에 있어서 민주화로 가는 이정표를 세운 일대 사건으로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17) 前掲,《行政訴訟法學》,73面.

완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괜찮을 것이다.<sup>18)</sup> 이로 인하여 소위 民告官이라는 과거에는 不可能 내지 口頭禪에 불과했던 민주적 장치가 실제로 중국에서 시행되기에 이른 점에서 중국 法制史上 기념비적인立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행정소송법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법원내에 行政裁判庭을 설치하여 행정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sup>19)</sup> 인민법원의 受案範圍를 확장하고, 각급인민법원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소송절차의 전반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제11장 75조로 구성되어 있다.

18) 刑事訴訟法과 民事訴訟法의 제정에 이어 行政訴訟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기초적인 節次法이 완비되게 되었다.

19) 行政裁判庭은 1986년 武漢市 中級人民法院이 설립한 것을嚆矢로 하며, 1988년 9월 5일에는 最高人民法院 行政裁判廳이 성립을 공포하고 재판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이후에 각급법원의 行政裁判庭의 설치가 이루어졌으며 1990년 말에는 중국 전역에 3037개가 설치되어 약 92.68%의 설치율을 보게 되었다 (前揭, 《中國訴訟制度法律全書》, 388面).

附錄

中華人民共和國行政訴訟法

(1989년 4월 4일 제7기 全國人民代表大會 제2차회의 통과, 1989년 4월 4일 中華人民共和國 主席令 제16호 公布, 1990년 10월 1일 施行)

目 次

제1장 總則

제2장 受案範圍

제3장 管轄

제4장 訴訟參加人

제5장 證據

제6장 提訴 및 受理

제7장 審理 및 判決

제8장 執行

제9장 權利侵害의 賠償責任

제10장 涉外行政訴訟

제11장 附則

제1장 總則

제1조 인민법원이 行政事件을 정확히 적시에 심리하는 것을 보증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리와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行政權을行使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憲法에 근거하여 이 法律을 제정한다.

제2조 公民, 法人 또는 其他 組織은 行政기관 또는 行政기관의 업무담당자의 具體的 行政行為가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

하는 경우는 이 법에 따라 人民法院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조 ① 인민법원은 법률에 따라 행정사건에 대하여 독립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며 行政機關, 社會團體 및 個人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인민법원은 行政裁判庭을 설치하여 행정사건을 심리한다.

제4조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경우는 事實을 根據로 하고 법률을 그 規準(準繩)으로 한다.

제5조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때는 具體的 行政行為가 법률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한다.

제6조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따라 合議制, 回避制度, 公開裁判制度 및 2審終審制을 실시한다.

제7조 당사자는 행정소송중 그 법률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8조 ① 각 민족의 공민은 자기 민족의 言語와 文字로 행정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

② 소수민족이 集團으로 居住하거나 여러 민족이 공동거주하는 地區에서는, 인민법원은 현지의 民族에게 通用되는 언어와 문자로 심리를 하고 법률문서를 발하여야 한다.

③ 인민법원은 현지 민족에 통용되는 언어, 문자에 통하지 않는 訴訟參與人에 대하여 麻譯을 제공해야 한다.

제9조 당사자는 행정소송중 辩論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10조 人民檢察院은 행정소송에 대하여 法律的 監督을 할 권한이 있다.

## 제2장 受案範圍

제11조 ① 인민법원은 公民, 法人 其他 組織이 아래와 같은 구체적 行政行為에 不服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수리한다.

1. 拘留, 罰金, 許可證 및 免許證의 취소, 생산정지와 영업정지명령, 재산몰수등의 행정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2.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산에 대하여 封印, 押留,凍結 등 을 하는 行政強制措置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3. 행정기관이 법률이 규정하는 經營自主權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정조건에 부합한다고 인정하여 행정기관에 허가증 및 면허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이 그 교부를 거절하거나 회답이 없는 때.
5. 행정기관에 人身權, 財產權 보호의 법정 직책을 이행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관이 이행을 거절하거나 회답이 없었을 때.
6.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撫恤金<sup>20)</sup>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행정기관이 위법하게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8. 행정기관이 기타 人身權, 財產權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前項이 규정한 것 이외에 인민법원은 法律, 法規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의 행정사건을 수리한다.

제12조 인민법원은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은 受理하지 않는다.

1. 國防, 外交등 국가행위
2. 行政法規, 規章 또는 행정기관이 제정공포하는 보편적 구속력을 가지는 決定, 命令.
3. 행정기관의 행정기관 담당자에 대한 褒賞과懲戒, 任免등의 결정.

20) 《中華人民共和國勞動條例》에 따라 勞動者가 노동중 사망하거나 不具退職후 사망한 경우 노동자의 直系扶養親族의 수에 따라 노동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產災保險金(《中華實用法學大辭典》(吉林吉林大學出版社, 1988), 848면).

4. 법률이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재결하도록 규정한 구체적 행정 행위.

### 제3장 管 轄

제13조 基層人民法院은 제1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14조 中級人民法院은 아래의 제1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발명특허권의 확인사건, 稅關이 처리한 사건.
2. 國務院의 각 部門 또는 省, 自治區, 直轄市 인민정부가 내린 구체 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
3. 자기의 관할구역내의 중대, 복잡한 사건.

제15조 高級人民法院은 자기의 관할구역내의 중대, 복잡한 제1심 행정 사건을 관할한다.

제16조 最高人民法院은 전국에 걸쳐 중대, 복잡한 제1심 행정사건을 관할 한다.

제17조 行政事件은 具體的 行政行爲를 최초로 한 행정기관 소재지의 인민 법원이 관할한다. 行政審判(復議)을 거친 사건은 심판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변경한 경우는 심판기관 소재지의 인민법원이 관할 할 수 있다.

제18조 人身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 은 被告 所在地 또는 原告 所在地의 人民法院이 관할한다.

제19조 不動產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행정소송은 부동산 소재지의 인민법 원이 관할한다.

제20조 2개 이상의 人民法院이 모두 관할권을 갖는 경우는 원고는 그중 하나의 인민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2개 이상의 관할권 있는 인민법원에 제소를 한 경우는 가장 먼저 소장을 접수한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1조 人民法院이 受理한 사건이 자기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권있는 인민법원으로 移送해야 한다. 移送을 받은 인민법원은 스스로 移送할 수 없다.

제22조 ① 管轄權있는 인민법원이 특수한 원인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는 상급 인민법원이 管轄을 指定한다.

② 인민법원사이에 管轄權에 대해 爭議가 발생한 경우는 쟁의쌍방이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協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그들의 공통되는 상급법원에 보고하여 관할을 지정 받는다.

제23조 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 행정사건을 裁判할 권한이 있으며, 자기 관할에 속하는 제1심 행정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移交하여 재판하게 할 수 있다.

② 하급인민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제1심 행정사건을 상급인민법원이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그 결정을 받을 수 있다.

#### 제4장 訴訟參與人

제24조 ① 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公民, 法人 또는 기타 組織은 원고이다.

② 제소권있는 公民이 사망한 경우는 그 近親屬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③ 제소권있는 法人 또는 기타 조직이 終止한 경우는 그 권리를 승계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5조 ① 公民, 法人 또는 기타 조직이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具體的 行政行爲를 한 행정기관이 피고이다.

② 行政審判(復議)을 거친 경우, 심판기관이 원래의 구체적행정 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

이 피고이고 심판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변경한 경우는 행정심판기관이 피고이다.

③ 2개 이상의 行政機關이 동일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경우 구체적 행정행위를 공동으로 한 행정기관은 공동피고가 된다.

④ 법률, 법규가 授權한 조직이 내린 구체적 행정행위에 관하여는 그 조직이 피고이다. 행정기관이 委託한 組織이 내린 구체적 행정행위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기관이 피고이다.

⑤ 행정기관이 廢除된 경우는 그 권한을 계속행사하는 행정기관이 피고이다.

제26조 当事자 일방 또는 쌍방이 2인 이상이 되는 경우, 동일한 具體的行政行為로 인하여 발생한 행정사건 또는 同種(同様)의 구체적 행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행정사건으로 인민법원이 併合 審理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동소송이 된다.

제27조 소송이 제기된 구체적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參加人(第三人)이 되어 소송에 참가하거나 인민법원이 訴訟參加를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 소송능력이 없는 공민은 그 法定代理人이 소송을 대리한다. 법정대리인 서로가 代理責任을 미루는 경우는 인민법원 그 중 한 사람을 指定하여 소송을 대리케 한다.

제29조 ① 當事者, 法定代理人은 1 내지 2인에게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케 할 수 있다.

② 辯護士, 社會團體, 訴訟을 제기한 공민의 近親屬 또는 소재단위가 추천하는 사람, 및 인민법원의 허가를 얻은 기타 공민은 위탁을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30조 ① 소송을 대리하는 辯護士는 規定에 따라 본안과 관계있는 자료를 열람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 조직과 공민에 대하여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국가의 機密과 個人의 私生活에 관한 자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당사자와 기타 訴訟代理人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정에 나온 자료를 조사열람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기밀 및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 제5장 證據

제31조 ① 證據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書證
2. 物證
3. 視聽資料
4. 證人의 證言
5. 當事者의 陳述
6. 鑑定結論
7. 檢證調書,現場調書

② 이상의 증거는 事實與否에 대한 法廷의 審查를 거친 후에야 事實認定의 근거로 할 수 있다.

제32조 피고가 행한 구체적 行政行爲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당해 구체적 행정행위를 내린 證據 및 그 根據가 된 規範的 文書를 제공해야 한다.

제33조 被告는 소송과정중 스스로 原告 및 證人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 할 수 없다.

제34조 ① 人民法院은 당사자에 대하여 證據의 提供 또는 補充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

② 인민법원은 관계 행정개관 및 기타 조직, 공민에 대하여 證據를 調查取得할 수 있다.

제35조 인민법원은 訴訟過程에서 전문적인 문제에 대하여 감정을 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法定의 鑑定機關에 교부하여 감정하여야 한다. 법정의 감정기관이 없는 경우는 인민법원이 지정하는 감정기관이 감정한다.

제36조 증거가 滅失의 가능성성이 있거나 이후에는 취득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訴訟參與人은 인민법원에 證據保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主動的으로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장 提訴 및 受理

제37조 ① 인민법원의 受案範圍에 속하는 행정사건에 대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먼저 上一級 行政機關 또는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행정기관에 行政심판(復議)를 신청할 수 있으며, 行政심판에 不服하는 경우에는 다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곧바로 人民法院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② 法律, 法規가 먼저 行政機關에 行政심판을 청구하고 行政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다시 인민법원에 제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法律, 法規가 規定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 ① 公民, 法人 또는 기타 組織이 行政기관에 行政심판을 신청한 경우, 行政심판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2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법률, 법규가 달리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申請人이 行政심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審判決定書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내에 人民法院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行政심판기관이 기간을 넘어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심판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公民, 法人 또는 기타 組織이 곧바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具體的 行政行爲가 있었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提起하

여야 한다. 그러나 法律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 公民,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不可抗力 또는 기타의 특수한 사정으로 法定期限을 徒過시킨 경우는 장애가 제거된 날로 부터 10일 내에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제41조 訴訟을 提起함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원고는 具體的 行政行爲가 자기의 합법적인 권리율 침해하였다 고 인정하는 公民, 法人 또는 其他 組織일 것.
2. 명확한 被告가 있을 것.
3. 구체적인 訴訟上의 請求와 사실상의 근거가 있을 것.
4. 인민법원의 受案範圍에 속하고 受訴 人民法院의 관할에 속할 것.

제42조 인민법원은 訴狀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내에 심사를 거쳐 立案 또는 不受理의 裁定을 하여야 한다. 원고가 裁定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는 上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제7장 審理 및 判決

제43조 ① 인민법원은 立案日로 부터 5일 내에 訴狀副本을 피고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피고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내에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關係資料를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答辯書를 제출해야 한다. 人民法院은 答辯書를 접수한 날로 부터 5일 내에 答辯書副本을 원고에게 發送해야 한다.

② 피고의 答辯書 不提出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4조 소송기간에는 具體的 行政行爲의 執行을 停止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중의 하나가 있는 때는 구체적 행정행위의 집행을停止한다.

1. 被告가 집행을 停止할 必要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원고가 집행정지를 申請하고 인민법원이 당해 구체적 행정행위의 집행이 回復하기 어려운 손실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집행의 정지가 사회공공이익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執行停止의 裁定을 한 때.
3. 法律, 法規가 집행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때.

제45조 人民法院은 行政事件의 심리를 공개한다. 다만 국가기밀에 관한 것, 개인의 私生活에 관한 것과 법률이 달리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46조 人民法院이 行政사건을 심리함에는 法官으로 合議部를 구성하거나 法官과陪審員으로 合議部를 구성하여 한다. 합의부의 구성원은 3인 이상의 흘수이어야 한다.

제47조 ① 당사자는 裁判關與人<sup>21)</sup>이 本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기타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裁判關與人の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② 裁判關與人은 자기와 本案 사이에 利害關係 또는 기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回避를 신청해야 한다.

③ 前2項은 書記, 翻譯人, 鑑定人, 檢證人에도 적용된다.

④ 법원장이 裁判長을 맡고 있는 경우의回避는 裁判委員會가 결정하고, 裁判關與人の 회피는 법원장이 결정하며, 기타 인원의 회피는 裁判長이 결정한다. 당사자가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는 심판(復議)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 인민법원의 2회에 걸친 합법적인 召喚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訴를 取下한 것으로 보며, 被告가 正當한 이유없이 出席하지 않는 때는 缺席判決을 할 수 있다.

제49조 ① 訴訟參與人 또는 기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항중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항의 輕重을 가려 訓戒, 始末書(悔過)의 제출 또는 1천원 이하의 벌금, 15일 이하의 拘留에 처하며, 犯罪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21) 法官과 補助法官을 포함하는 용어임.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1. 執行에 協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인민법원의 執行協助通知書에 대해 이유없이 이를 遲延하거나 집행을 拒絕 또는 妨害하는 경우.
2. 증거를 偽造, 隱匿, 灰滅하는 경우.
3. 타인을 使嗾, 買受, 駕迫하여 偽證하게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駕迫, 沖止하는 경우.
4. 이미 封印, 押留, 凍結된 재산을 隱匿, 移轉, 賣却, 毀損하는 경우.
5. 暴力, 駕迫 혹은 기타 방법으로 人民法院의 직무담당자의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인민법원의 業務秩序를 扰亂한 경우.
6. 人民法院의 職務擔當者, 訴訟參與人, 執行協助人을 侮辱, 謔謗, 謠告, 殲打 또는 報復하는 경우.

② 罰金, 拘留는 반드시 인민법원 원장의 比準을 얻어야 한다. 당사자가 不服하는 경우는 審判(復議)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 인민법원이 行政事件을 심리하는 경우는 調整을 하지 않는다.

제51조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判決 또는 裁定<sup>22)</sup>을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소 취하의 신청을 하거나 被告가 자기가 한 具體的行政行爲를 변경하고 이를 원고가 동의하여 訴取下의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것인가는 인민법원이 裁定한다.

제52조 ①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법률 및 行政법規, 그 地方의 法規에 의거하여 한다. 지방의 법규는 그 行政구역내에서 발생하는 행정사건에 적용한다.

② 인민법원이 民族自治地方의 行政事件을 심리하는 경우는 당해 민족자치지방의 自治條例와 單行條例에 의거하여 한다.

22) 우리의 決定에 해당. 중국에서는 決定이라는 用語를 裁判委員會의 판단표시로 사용하므로 그대로 裁定으로 표시한다.

제53조 ①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함에는 國務院의 部, 委(위원회)가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근거하여 制定公布한 規章 및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성, 자치구의 人民政府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의 인민정부가 법률 및 국무원의 행정법규를 근거로 제정, 공포한 規章을 參照한다.

② 인민법원이 지방인민정부가 제정, 공포한 規章과 國務院의 部, 委가 제정, 공포한 規章이 불일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국무원의 部, 委가 제정, 공포한 規章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최고 인민법원이 國務院에 移送하여 解釋 또는 裁決을 요청한다.

제54조 인민법원은 審理를 거쳐 각기 다른 사정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판결을 각각 내린다.

1. 구체적 행정행위가 證據가 確實하고 法律, 法規의 적용이 정확하고 法定節次에 符合하는 경우는 維持判決을 한다.
2. 구체적 행정행위가 아래 事情中의 하나에 該當할 때는 取消 또는部分取消의 판결을 하며, 아울러 피고가 다시 구체적 행정행위를 하도록 判決할 수도 있다.
  - (1) 主要한 證據가 부족한 경우
  - (2) 法律, 法規의 적용에 錯誤가 있는 때.
  - (3) 法定節次를 위반한 때.
  - (4) 權限을 超過한 때
  - (5) 職權을 濫用한 때
3. 被告가 법정의 직무를 不履行하거나 이행을 遲延하는 경우는 일정기간내에 이행하도록 판결한다.
4. 行政處罰이 현저히 公正性을 잃은 경우는 变경판결을 할 수 있다.

제55조 人民法院가 被告에게 다시 구체적 행정행위를 하도록 판결한 경우, 피고는 동일한 사실 및 이유로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와 기본적으

로 동일한 具體的 行政行爲를 할 수 없다.

제56조 人民法院이 行政사건의 심리중, 行政機關의 擔當者, 責任者가 紀律(政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관계자료를 더해 行政기관 또는 그 上一級 行政機關 또는 監察, 人事機關에 이송하여야 하며, 범죄적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계자료를 公安, 檢察機關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57조 人民法院은 立案日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제1심판결을 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이 있어 延長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高級人民法院이 比準하며 고급인민법원이 제1심 사건을 심리함에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最高人民法院이 비준한다.

제58조 당사자가 제1심판결에 不服하는 경우는 判決書의 送達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上一級 人民法院에 上訴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심의 裁定에 불복하는 경우는 裁定書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上一級 人民法院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나도록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제1심 判決 또는 裁定은 法律的效力를 발생한다.

제59조 인민법원은 上訴事件의 事實關係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書面審理를 할 수 있다.

제60조 인민법원이 상소사건을 심리하는 경우는 上訴狀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終審判決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延長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고급인민법원이 比準하며, 고급인민법원이 상소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延長이 필요한 때는 최고인민법원이 비준한다.

제61조 人民法院이 상소사건을 審理함에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라 분별 처리한다.

1. 原判決이 인정한 事實이 分明하고 법률, 법규의 적용이 정확한 때는 判決로 上訴를 棄却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
2. 原判決이 인정한 사실은 분명하나 법률, 법규의 적용에 착오가 있

는 경우는 법에 따라 고쳐 판결(改判)한다.

3. 原判決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 증거부족 또는 법정절차의 위반으로 인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 있는 경우는 原判決을 取消하는 裁定을 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할 수 있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분명히 한 후 고쳐 판결할 수도 있다. 當事者가 사건을 다시 재판한 判決, 裁定에 불복하는 경우는 상소할 수 있다.

제62조 당사자가 이미 法律의效力이 발생한 判決, 裁定에 착오가 있음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原審人民法院 또는 上一級 人民法院에 再審(申訴)을 청구할 수 있다. 단 判決, 裁定의 執行은 정지되지 않는다.

제63조 ① 人民法院長은 자기 법원의 이미 法律의效力이 발생한 判決, 裁定에서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여 再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裁判委員會<sup>23)</sup>에 넘겨 再審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上級 人民法院이 하급인민법원의 이미 법률적효력이 발생한 判決, 裁定에서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는 提審<sup>24)</sup>하거나 下級 人民法院에 再審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64조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이미 法律의效力이 발생한 判決, 裁定에서 법률, 법규의 규정을 違反한 것을 발견한 때는 裁判監督節次에 따라 抗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제8장 執 行

제65조 ① 당사자는 반드시 人民法院의 法律의效力이 발생한 判決, 裁定 을 이행하여야 한다.

23) 各級法院에 설치되어 어려운 사건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을 討論 決定하고 그決定에 따라 受訴法院에 재판을 하도록 하는 機關.

24) 事件을 끌어올려 自身이 裁判함.

② 公民,法人 또는 기타 조직이 판결,재정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行政機關은 제1심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 行政機關이 判決, 裁定의 履行을 拒絕하는 경우 제1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應當 반환해야 할 罰金 또는 應當 支給하여야 할 배상금은 당해 行政기관의 계좌(帳戶)로 부터 대체(劃拔)하도록 은행에 통지한다.
2. 規定된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기한 만료일로 부터 당해 行政機關에 날 수에 따라 50원 내지 100원의 벌금에 처한다.
3. 당해 行政機關의 上一級 行政機關 또는 監察, 人事機關에 司法的建議를 한다. 사법적 건의를 받은 기관은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며 그 處理狀況을 人民法院에 告知한다.
4. 判決, 裁定의 履行拒否가 그 정황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 그 담당자 또는 직접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추구한다.

제66조 公民, 法人 또는 기타 組織이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정기한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또 이행도 하지 않는 경우, 行政機關은 人民法院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다.

## 제9장 權利侵害에 대한賠償責任

제67조 ① 공민,法人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리이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 담당자가 한 구체적 行政行爲로 侵害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공민,法人, 또는 기타 조직이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경우는 우선 行政機關이 해결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처리에 불복하는 경우는 人民

法院에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③ 賠償訴訟에는 調整을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 ① 行政機關 또는 行政기관의 擔當者가 한 구체적 행정행위가 公民, 法人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권익을 침범하여 손해를 조성한 경우는 당해 行政기관 또는 當該 行政機關 擔當者가 소재하는 行政기관이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行政機關이 손해를 배상한 후에는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있는 行政기관 담당자가 배상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명령을 해야 한다.

제69조 賠償費用은 각급 財政에서 각각 지급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책임이 있는 行政기관에 賠償費用의 一部 또는 全部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國務院이 정한다.

## 제10장 涉外行政訴訟

제70조 外國人, 無國籍者, 外國의 組織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行政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률이 달리 규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71조 ① 外國人, 無國籍者, 外國의 組織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行行政소송을 하는 경우는 중화인민공화국 公民, 組織과 同等한 소송상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外國法院이 중화인민공화국 公民, 組織의 行行政소송상의 권리에 대하여 制限을 가하는 경우에는, 人民法院은 當該國 公民, 조직의 行行政소송상의 권리에 대하여 對等한 原則을 실행한다.

제72조 中華人民共和國이 締結 또는 參加한 國제조약과 이 법의 규정 사이에 다른 점이 있는 경우는 當該 國際條約의 規定을 적용한다. 다만 中華人民共和國이 保留聲明을 한 것은 제외한다.

270 영남법학(제1권 제2호/1994.9)

제73조 外國人, 無國籍者, 外國組織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行政訴訟을 하면서 辯護士에게 소송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기구의 辯護士에게 위탁해야 한다.

#### 제11장 附 則

제74조 人民法院이 行政事件을 심리하는 경우는 訴訟費用을 징수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敗訴한 쪽이 부담하며 쌍방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쌍방이 分擔한다. 소송비용 징수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75조 이 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施行한다.